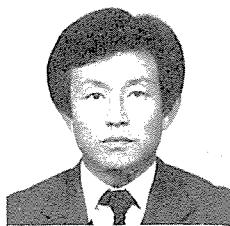


원유 검사제도 개선



농림수산부 기축위생과
수의관 송 지 봉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축검사의 질서화립과 원유검사의 신뢰도를 향상 할 목적으로 당부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축 및 원유검사 업무 처리규정을 농림수산부 훈령 제664호('88. 2. 8)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별첨1)

본고에서는 도축 및 원유검사 업무 처리규정 중에서 변동되는 원유검사업무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제도개선 배경

원유에 대한 위생검사는 축산물 검사원이 수행하

여오다가 1977년 12월 21일 이후 원유의 자체검사 제도 시행에 따라 유업체에 소속된 자체검사원이 원유 위생검사를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자체검사제도 시행은 원유 생산량의 급증으로 인한 검사 업무량이 과중하여 한정된 축산물검사원 만으로는 검사실시가 어려움으로 집유장의 경영자가 그 소속 수의사로서 2년이상 원유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체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원유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축산물검사원은 자체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집유장 및 원유에 대하여 월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검사원이 유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원유가 체화될때에는 원유검사 결과에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낙농가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원유 부족시에는 집유장간의 과도한 집유 경쟁으로 인하여 원유 위생검사에 소홀할 우려가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기관·단체등에서는 원유검사를 공영화하여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으나 원유검사의 공영화는 현행 집유제도를 개선하여 집유전담기구가 설치된 경우 동 기구에 원유검사 기능을 부여하여 원유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원유검사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어느것이나 실시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당장 실시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원유검사의 공영화가 실시될 때 까지는 축산물검사원의 수시검사를 강화하여 낙농가의 원유검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원유의 위생검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 규정을 제정하여 원유검사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 제도개선 내용

가. 검사요령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원유검사 요령에 의하면 자체검사원은 각 목장별로

- 관능검사, 비중검사 및 알콜검사는 매일.
- 침사시험, 적정산도시험, 세균발육 억제물질 검사 및 성분검사는 정기적으로
- 세균수 시험과 채세포수 시험은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는 축산물검사원은 월 1회이상 집유장 및 원유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농림수산부 훈령 제664호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유지방성분검사 및 세균수시험을 직할시 및 도가축위생시험소(서울특별시는 보건환경연구소를 말하며, 지소를 포함한다)근무 축산물검사원이 주 1회이상 자체검사원의 입회하에 집유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축산물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당해 집유장에 비치되어 있는 검사대장에 기록 날인하고 즉시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험소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것은 축산물검사원이 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원유검사 중 유지방검사 및 세균수시험에 대하여는 주 1회이상 강화하였다는 점입니다.

나. 유대지급 방법

원유검사 항목은 성분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원유위생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들이나 현행 유대는 유량 및 성분(유지방)검사 성격에 의하여만 지급되고

있어 낙농가가 원유위생에 소홀할 우려가 없지 않으며 또한 유지방검사 성격도 유업체 소속 자체검사원이 검사성격에 의하여만 지급되고 있어 낙농가의 불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유대지급 산출항목 중 유지방검사 성격은 자체검사원과 축산물검사원의 검사결과에 의하도록 하므로서 유지방검사 성격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提高)하여 낙농가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유위생검사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세균수시험도 강화하여 낙농가와 유업체의 원유위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세균수시험 성격도 유대 지급 산출항목에 포함하므로서 양질의 원유생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期)하고자 합니다.

3. 결론

금번 시행하는 원유검사 제도 개선은 원유검사의 공영화 실시 이전의 중간 조치로서 우선 팽배한 낙농가의 원유검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올림픽 등 빈번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대비하여 선진국

별첨 1

구분	시험소	집유장	검사원
서울	1개소	3개소	—명
부산	1	—	3
대구	1	1	3
인천	1	3	2
광주	—	3	3
경기	5	20	26
강원	4	7	11
충북	3	5	10
충남	5	14	16
전북	4	5	18
전남	3	3	19
경북	4	7	20
경남	4	8	19
제주	1	2	5
계	37	81	155

* 검사원은 국가 수의직 공무원 수임 (지방 수의직 공무

수준의 양질의 원유생산 및 원유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인바.

 � 제도의 개선으로 집유업체와 낙농가간의 불신이 일소하고 고지방유 생산에만 주력하던 목장관리에서 탈피하여 젖소의 인수공통전염병등 질병예방을 위한 개체관리, 착유장등 목장환경 및 시설위생 관리와 원유의 위생적인 유통으로 국민보건향상 및 국내낙농산업발전의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별첨1

농림수산부 훈령 제664호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축 및 원유검사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8. 2. 8
농림수산부장관

도축 및 원유검사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업무 중 도축 및 원유검사의 효율성 제고로 도축검사의 질서 확립과 원유검사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① 도축 및 원유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직할시 및 도·가축위생시험소(서울특별시는 보건환경연구소를 말한다. 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서 전담하여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시험소의 검사원 부족 등의 사정으로 시험소에서 도축검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지역의 도축검사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원 위촉

공수의 또는 시·군에 근무하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축검사) 도축검사는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4의 1에 의한 도축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원유검사) ① 원유검사는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4의 2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원은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 중 유지방 및 세균수검사를 주1회 이상 집유장에서 실시하되 자체검사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는 당해 집유장에 비치되어 있는 검사대장에 기록 날인하고 즉시 시험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업무의 지도감독 등) 시험소장(지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지역의 도축 및 원유검사 업무를 총괄하며, 검사원의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체교육 및 검사업무 세부 추진 요령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근무) ① 도지사는 시험소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시험소에서 계속하여 장기간 근무한 검사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소간에 순환근무를 하게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은 검사원을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작업장(도계장 및 도토장은 제외) 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88. 3.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시험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직할시에는 시험소가 설치될 때까지 현행대로 검사를 실시한다.

통일로 열매 맷자
88로 꽂피우고